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길자 의원 발의】



2017. 12.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21호로 2017년 11월 13일 김길자 의원 외 5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나.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다. 관광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라.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제8조)

마. 관광정보센터내 전문인력배치 (안 제9조)

바.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관광여건 조성 발전을 위해 종합시책 마련과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관광정보센터 내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재정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